
갤럭시자산[주]

투자권유준칙

(규정 제 호)

소관부서 : 준법감시인실
제정 : 2017년 11월 10일

투자권유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갤럭시자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 가. 파생상품
 -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

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적정성원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서식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서식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른다.
- ⑥ 임직원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1]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⑦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서식2]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2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전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별표2]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특칙) 임직원등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

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ㄱ.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ㄴ.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a.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b.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c.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ㄷ. 신탁계약
 - a. 법 제103조제1항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 b. 법 제10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증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 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

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 권유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⑤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

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16조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명시 다

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 5 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7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표1]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 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8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전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의 규정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 [예시]

- * 회사는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함

위험도 책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 요소**

		구 分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 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여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책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책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 (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킹 에러, 젠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위험도 책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성적 요소**

		구 分	설 명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의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위험		만기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별표2]

적합성 판단 방식 [예시]

[방식1] 투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함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함
 - 점수화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 가능함
- 이 경우,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를 각각 점수화하여 적합성 판단에 활용할 수도 있음

<장점>

- ▶ 객관화된 답변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파악이 용이함

<단점>

- ▶ 배점이 맞지 않을 경우 답변 결과가 투자자의 실제 투자성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 투자자에게 중요한 특정 정보가 투자권유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

[방식2] 추출(Factor-out) 방식

-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정하지 않고,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별하는 방식
 - (항목-상품 매칭) 각 항목별로 투자권유에 적합한 상품들을 미리 정해둠
 - (적합상품 선별) 각 항목별로 차례대로 답변한 결과에 따라 요건에 충족되는 상품들만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품리스트를 투자권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 질문1)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음’ → 모든 상품 권유 가능

이해도 '보통' → 파생상품 및 구조가 복잡한 구조화증권 배제

* 질문2) 기대수익률이 '예·적금 수준' → 파생상품, 주식, 주식형펀드 등 배제

→ 질문을 단순화하고 질문별로 선택할 수 있는 답변의 수가 적어야 적용이 용이함

<장점>

- ▶ 비교적 단순한 질문을 통하여 투자권유가 가능한 모든 상품리스트를 곧바로 볼 수 있어 창구에서 활용이 편리함
- ▶ 투자자 정보의 모든 요소가 고려되므로 추후 불완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음

<단점>

- ▶ 판매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질문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방식3] 혼합 방식

- 점수화 방식(방식1)과 추출 방식(방식2)을 혼합하여 사용함
-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참고1]의 (예시2)와 같이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와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 구분하여 파악한 후,
 - 투자자의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서는 점수화 방식(방식1)을 활용하여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 성향에 부합하는 유형의 상품군을 결정함
 - 위에서 결정된 해당 유형의 상품군 중에서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의 각 항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답변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출함(방식2)
- * 예) “일반적 투자자성향 정보”에 대해 점수화 방식으로 파악한 결과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이 적합
→ 현재 투자자금의 투자목적이 ‘사업자금’이고 투자 예정기간이 ‘3개월’이라면 ‘저위험-저수익형’에 해당하는 상품군 중에서 MMF만 투자권유 가능함

<장점>

- ▶ 투자자의 현재 투자자금의 목적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점수화 방식보다 불완전판매문제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 ▶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하여 분석해야 하는 기준이 현재 투자자금성향 정보로만 축소

되므로 추출방식에 비하여 시스템이 덜 복잡하고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단점>

- ▶ 현재 투자자금성향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여야 하므로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보다는 다소 절차가 복잡함

[방식4] 상담보고서 활용 방식

□ 투자자와의 상담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

- (상담과정 및 결과 기록) 상담을 통해 파악한 투자자 정보와 함께 상담의 결과로 특정한 권유가 이루어진 이유를 상담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장점>

- ▶ 투자자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며 판매직원의 경험 및 노하우의 활용이 가능함
- ▶ 투자자의 재산, 포트폴리오 현황 및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심층적인 상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 단일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에 적합한 점수화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신탁·자문·일임·포트폴리오투자 등에 적합함

<단점>

- ▶ 판매직원의 능력에 따라 상담수준 및 투자권유 결과가 결정되므로 판매직원의 전문성이 요구됨

□ 세부 프로세스

- 상담 결과에 따른 투자자성향 파악 방법 및 성향에 따른 투자권유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방침(각 설문항목에 대한 답변에 대응하여 적합하지 않은 상품 유형을 정하는 등)을 정함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다음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후 적합한 상품 또는 자산배분 (Portfolio)을 제시함

상담보고서 활용시 파악할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개인정보】

- ▷ 투자자의 성명, 나이, 가족관계(부양가족 여부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목적 및 투자기간】

- ▷ 투자자의 투자목적(정기적 수입, 은퇴자금, 교육자금, 자산증식 등)과 해당목적에 따른 예상 투자기간 등에 관한 답변 사항
- ▷ 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투자경험 유무 및 투자기간 등

【재산상황】

- ▷ 투자자의 투자금액, 투자금액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자산현황(금융자산, 부동산 등), 수입원(고정수입원 유무, 직장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월수입, 지출현황 등),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상태에 대한 예상 등에 관한 답변 사항

【투자경험 및 지식, 투자권유 의존도】

- ▷ 투자자의 투자경험("파생상품등"을 포함하여 기존 투자했던 금융상품 유형 및 투자기간 파악), 금융상품 투자에 관한 지식수준, 투자결정시 전문가에의 투자조언 여부 등에 관한 답변 사항

【위험에 대한 태도】

-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및 손실률에 대한 감내수준, 시장상황(예 : Kospi지수 추이)에 따른 기대 수익률(가상의 수익률 안을 여러 개 제시), 큰 폭의 시장하락 또는 장기적인 시장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별 누적수익률에 대한 선호도(가상의 투자안을 여러 가지 제시함), 5년 이상의 투자기간에 대한 가상의 기간별 투자수익률을 제시하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결정(투자자금 전액 출금, 일부출금, 추가 매입, 보유 등) 등에 관한 답변 사항

【기타 사항】

- ▷ 투자자와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특이정보(2년 후 이민계획, 자녀의 대학 입학, 자녀의 유학계획 등)를 기재함

상담보고서 작성 예시

예시1)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이번 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으로서, 수익

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으로 00년 00월이 만기인, 원금대비 손실이 20%로 제한되는 00 ELS 00호(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2)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금융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주식시장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 35세의 투자자로서 매월 급여(약 400만원 수준) 중 100만 원 정도를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시장 수준의 이익을 내기를 바라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투자자는 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상품이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식시장의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매월 100만원씩 oo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예시3)

투자자와의 논의를 통해 본인은 투자자가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면서도, 자녀들의 대학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장기적으로 약간 위험하더라도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기를 원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한 자산배분으로 투자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은 저위험 상품인 oo국공채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향후 3년 후부터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100만원 정도를 oo혼합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할 것을 권유합니다.

[별표3]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 [예시]

-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2]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다.
2.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나.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3.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구분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만 65세 이상	- 파생상품등 권유불가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만 65세 미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결합증권 - 원금손실률이 20% 이내로 제한되는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등	

* 상기의 파생상품등으로 운용하는 금전신탁계약의 경우 운용 대상 자산에 적용되는 적합성 기준을 금전신탁계약에 적용

[별표4]

적합성 판단 방식 (장외파생상품) [예시]

- ▶ 회사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별표2]의 적합성 판단 방식 이외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참고하여 투자권유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스왑
 - 나. 옵션매수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주권 비상장법인 및 개인사업자,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만 65세 미만이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일반투자자인 개인에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만 투자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위험관리능력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투자자(일반투자자인 개인은 제외)에 대하여는 가 목부터 다 목 이외의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도 투자권유할 수 있다.
 - 가. 금리 · 통화 스왑
 - 나. 옵션 매수 · 매도
 - 다. 선도거래

구분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개인	만 65세 이상	금리스왑 옵션매수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만 65세 미만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법인 및 개인사업자	주권 비상장법인, 개인 사업자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주권 상장 법인	금리스왑, 통화스왑, 옵션매수, 옵션매도, 선도거래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며, 각 위험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예시는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의 회사참고사항을 참조할 것

* '경고'위험도에 적합한 투자자 중 위험관리능력, 장외파생상품 투자경험,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는 기타 위험회피 목적의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 [예시1]

<예시1 안내사항>

- ▶ 회사는 다음에 예시된 투자자정보 확인 항목들을 참고(가감)하여 회사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는 필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 주어진 예시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동일하게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CMA, MMF, RP, 국채 등 회사가 위험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일임·신탁 등 계약의 권유는 계약의 특성에 맞는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점선 박스안의 내용은 회사가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양식에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함)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정보 항목 [예시]

대분류	질문 예시	비고
재산상황	월소득 대비 투자 가능 자산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이하 <input type="checkbox"/> 0% 초과	적립식 투자시 고려할 항목
	여유자금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0개월분 미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의 가계지출에 해당

	<input type="checkbox"/> ○개월분~○개월분 <input type="checkbox"/> ○개월분~○개월분 <input type="checkbox"/> ○개월분~○개월분 <input type="checkbox"/> ○개월분 초과	하는 여유자금 확인
	월소득 현황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만원 초과	
	향후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아주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좋아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지금과 비슷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나빠질 것임 <input type="checkbox"/> 매우 나빠질 것임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input type="checkbox"/>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향후 투자예정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또는 수입원
	총 자산규모(순자산) <input type="checkbox"/>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억 이하 <input type="checkbox"/> ○억 초과	
	총 금융자산대비 총 투자상품의 비중 <input type="checkbox"/> ○%이하 <input type="checkbox"/> ○%이하 <input type="checkbox"/> ○%이하 <input type="checkbox"/> ○%이하 <input type="checkbox"/> ○%초과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향을 파악하는 항목
투자경험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주식 <input type="checkbox"/> ELW <input type="checkbox"/> 신용거래 <input type="checkbox"/> 외화증권 <input type="checkbox"/> 선물옵션 <input type="checkbox"/> 채권 <input type="checkbox"/> 주식형펀드 <input type="checkbox"/> 채권/혼합형펀드 <input type="checkbox"/> 해외펀드 <input type="checkbox"/> 투자자문·일임 <input type="checkbox"/> 신탁 <input type="checkbox"/> 기타 []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부분 설명의무 간소화 가능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복수선택가능) <input type="checkbox"/>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input type="checkbox"/>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p>원금보장형 ELS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p> <p><input type="checkbox"/>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기간</p> <p><input type="checkbox"/> 전혀 없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p>	
	<p>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p> <p><input type="checkbox"/> 투자기간 (년 월)</p>	<p>*회사참고사항 2-1 “파생상품 등”의 정의 참조</p>
투자목적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p> <p><input type="checkbox"/> 채권이자·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해지 목적</p>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p>노후자금, 주택마련, 자녀 교육, 사업자금, 여유자금 등 투자자금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p>
	<p>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p> <p><input type="checkbox"/>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수익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높은 수준으로, 손실 기준으로 질문할 경우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답하는 맹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항목</p>
	<p>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p> <p><input type="checkbox"/> ±0% 범위 <input type="checkbox"/> ±0% 범위 초과</p>	<p>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파악</p>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 (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p>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input type="checkbox"/>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손실감내 수준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input type="checkbox"/> 원금기준 ±0% 범위	
투자하는 자금의 투자 예정기간	<input type="checkbox"/> 0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0개월 이상 ~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 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0년 이상	현재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예정기간
가족관계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양가족 없음	
과세형태	<input type="checkbox"/> 종합과세대상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대상	
연령	<input type="checkbox"/> 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0세~○세 <input type="checkbox"/> ○세~○세 <input type="checkbox"/> ○세~○세 <input type="checkbox"/> ○세 이상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확인 할 수도 있음
취약투자자 여부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 65세 이상 투자자 - 미성년자 - 정신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 금융투자상품 무경험자 - 문맹자 등	취약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파악 *취약투자자 해당 여부는 임직원등이 판단하여 기입함

<투자자성향 분류 참고사항>

- ▶ 회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합성 판단 기준을 감안하여 투자자성향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성향을 점수화 방식으로 판단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정보의 항목별 배점기준 및 배점결과에 따른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투자자성향을 일정한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제1방식	제2방식	제3방식	제4방식
<input type="checkbox"/> 고위험- 고수익형	<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형	<input type="checkbox"/> 위험선호형	<input type="checkbox"/> 공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중위험- 중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주식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적극형	<input type="checkbox"/> 주식펀드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저위험- 저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이자배당형	<input type="checkbox"/> 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안정성장형 <input type="checkbox"/> 위험회피형	<input type="checkbox"/> 고수익채권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투자형 <input type="checkbox"/> 안정투자선호형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형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 일자 :

· 고객의 성명 :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서명/인)

※ 투자자정보에 대해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회사의 경우에 해당함

투자권유 불원 (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파생상품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 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상품명 및 위험등급 : () (등급)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참고사항〉

※ 투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 ▶ 투자가 회사가 투자권유한 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하거나, 위의 투자자 확인 내용(부적합 금융투자 상품 거래 확인)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고 후속 판매절차를 지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의 2)및 3) 참조>

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귀사가 파악한 본인의 투자성향이 ()등급임을 고지 받았으며, 본인의 투자성향 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상품명 및 위험등급 : () (등급)

· 일자 : · 고객의 성명 : 서명/인
(대리인 거래시 대리인 성명 : 서명/인)

<참고사항>

※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함

- ▶ 파생상품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 결과 적정치 않은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기와 같이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부적정 사실을 확인한 후 후속 판매 절차(관련 금융투자상품 설명, 설명서 교부 등)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7.의 2) 참조>

[별지서식2]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예시]]

- ▶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일반투자자인 투자자에게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권유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기명날인(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 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 ▶ 파악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적정한 파생상품을 권유하는 데 활용합니다.
- ▶ 또한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권유 없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파생상품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면담,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거래)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최대한 투자자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회사는 투자자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께서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유형	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비상장기업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	-------------------------------	--------------------------------	--------------------------------

I. 투자자의 재무현황

1. 재무현황

자산 총계 : _____ 외화자산 총계 : _____
부채 총계 : _____ 외화부채 총계 : _____
연간 수출총액 : _____ 연간 수입총액 : _____
금융투자자산 보유금액 : _____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 및 약정잔액[모든 금융기관 포함]

II. 거래의 목적

거래목적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투자자께서는 위험회피(해지) 목적으로 아래 거래를 체결하고자 합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I.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1. 거래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	이자율	상품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위험회피(해지)하고자 하는 해당 기초자산의 보유 내역 및 금액, 보유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V.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

1. 장외파생상품 최고 의사결정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2. 장외파생상품 거래체결 담당자*			
소속부서 :	직급 :	성명 :	
관련경력 :	관련 자격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지식 보유 정도	상 : (전문가 수준) :	중 :	하 :
3. 투자자의 대표자 및 위에서 언급한 임(직)원들이 모두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거래의 조건과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4. 투자자께서 거래하고자 하는 장외파생상품이 투자자께서 회피하고자 하는 위험의 속성 및 규모에 비추어 적합합니까?			
예 :	아니오 :		

* 투자자가 법인 등 단체인 경우 대표자 이외의 임직원이 회사와 거래를 실행하는 경우로서 별도 양식으로 그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거래 인감(서명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V. 위험관리능력

위험관리능력	예	아니오	비고
1. 장외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여부			조직명: 인원수:
2.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규정,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절차 보유 여부			규정명:
3.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전산시스템명 :

VI. 금융거래수준

투자자께서 지금까지 거래한 경험이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 규모 등에 대하여 다음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종류	경험유무	건 수	거래연수	거래규모*
선물환(FX Forward)				
FX 스왑(FX Swap)/통화스왑(Currency Swap)				
구조화 통화 옵션(Exotic FX Option): KIKO 등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				
상품 파생(Commodity Derivatives)				
기타 유형 :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규모는 원화 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투자자 확인

▶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OO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받았습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직 위)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법인명) _____

00회사 확인

▶ 이 확인서 내용은 00회사가 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에 앞서 그 거래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파악한 정보입니다.

작성일자 : _____년 _____월 _____일
 (00회사 지점/부서명) _____ (담당자) _____ (서명/인)

<참고사항>

* 예시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투자가가 작성하는 양식이며, 만약 투자가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참고1]의 투자자 확인(부적정 파생상품등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확인서 사본에 회사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본 조사표 원본은 회사가 보관합니다.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양식 [예시]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투자위험등급 : 1등급

[초고위험]

OO증권(주)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사항 (예시)]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원금 손실 가능성 (또는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위험은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위험에 체크).

- 신용위험** : 발행사 부도 등 위험에 따른 손실위험
(투자부적격 등급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 시장위험**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 환위험** :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
 - 기타위험** ()

※ 이 금융투자상품(계약)의 다른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에 대해서는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고객 확인 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았음, 받지 않음, 교부를 거부하였음]
 2.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가능함을 알고 있음,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 들었음]
 3.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4. [상대적 위험도]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 듣지 못했음]
 5. [주요위험] 및 [손익구조]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100

고객 설명

서명 또는 (인)

【 기재방법 】

- ▶ 투자위험등급은 판매사의 자체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 위험등급별로 “적색”, “황색”, “녹색”으로 색상을 3단계로 차등화 되되, 용지 또는 위험등급칸의 색상을 차등화한다.(위험등급이 5등급인 경우, 1~2등급 : 적색, 3~4등급 : 황색, 5등급 : 녹색으로 분류)
- ▶ 고객 성명 및 서명란은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의 핵심사항(“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대상 아님”, “핵심투자위험”) 기재 Box는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굵은 글자로 기재한다.
- ▶ 핵심투자위험은 각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위험으로 1~2개를 체크하되, 예시된 위험 이외의 위험인 경우에는 기타위험에 체크하고 해당위험을 판매직원이 직접 기술한다.
 - 신용등급의 투자부적격여부에 ○표 또는 체크 한다.
 -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포함)인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신용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한다.
 - 집합투자증권은 리스크 비중이 가장 큰 편입자산의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위험을 체크한다.
- ▶ 판매회사보관용의 내용중 상대적 위험도 괄호안과 고객확인 사항중 괄호안의 글자를 고객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고객보관용은 고객에게 교부하고, 판매회사 보관용은 판매회사가 보관한다.